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30
------------	-------

제출년월일 : 2019. 03.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게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료(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인)하고자 조례 일부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해 10% 감면(할인) 규정 마련

- 2019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 적용 및 중복감면 제한 규정
-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연번	자치법규 명	개정 내용	비고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연회비의 100분의 10 감액-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 적용	조례안 제1조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시설사용료와 수강료의 100분의 10 할인	조례안 제2조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 수강료의 100분의 10 감액	조례안 제3조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액 -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 적용	조례안 제4조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등의 100분의 10 감액 -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 적용	조례안 제5조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이용료의 100분의 10감액	조례안 제6조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10 감액	조례안 제7조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할인	조례안 제8조
9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10 감액 -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 적용	조례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관련 부서 협의 완료 (가정복지과, 마포중앙도서관, 자치행정과, 총무과, 교육청소년과, 교통지도과, 문화진흥과, 생활체육과)
-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2. 22. ~ 3. 14. (제출의견 없음)
 - 2)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제외법령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종료)

- 3) 자치법규 부폐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9. 3. 19.)
- 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
- 6)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 7)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 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회비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별표의 시

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용료 등을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7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 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사용료등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센터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 제5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6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제7호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7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8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제13조의3제1항제12호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0조(「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연회비 징수)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9조(연회비 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u> <u>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u>
<u><신 설></u>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회비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⑤ · ⑥ (생 략)	⑦ · 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u><부 칙></u>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5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사용료 등)</p> <p>① ~ ③ (생 략)</p> <p><u><신 설></u></p>	<p>제13조(사용료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별표의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p>
<p><u><부 칙></u></p>	<p>제2조(유효기간)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p>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사용료 등)</p> <p>① ~ ⑤ (생 략)</p> <p><u><신 설></u></p>	<p>제10조(사용료 등)</p> <p>① ~ ⑤ (현행과 같음)</p> <p><u>⑥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u></p> <p><u>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u></p> <p><u>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u></p>
<p>⑥ · ⑦ (생 략)</p> <p><u><부 칙></u></p>	<p>⑦ · ⑧ (종전 ⑥ · ⑦과 같음)</p> <p>제2조(유효기간) 제10조제6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p>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u> <u>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u> <u>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u> <u>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u> <u>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u> <u>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u> <u>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u> <u>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u> <u>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u> <u>자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10을</u> <u>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u> <u>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u> <u>능한 경우에 한한다.</u>
<u><신 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u><부 칙></u>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3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등) ① ·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시설 이용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1. ~ 6. (생 략) <u><신 설></u>	제7조(사용료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다만, 사용료 등을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 6. (현행과 같음) <u>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u> <u>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u> <u>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u> <u>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u> <u>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u> <u>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u> <u>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u>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u> <u>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u> <u>에게 사용료등의 100분의 10을</u> <u>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u> <u>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u> <u>가능한 경우에 한한다.</u>
④ (생 략) <u><부 칙></u>	④ (현행과 같음) 제2조(유효기간) 제7조제3항제7호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이용료 등의 징수)</p> <p>① ~ ④ (생 략)</p> <p><u><신 설></u></p>	<p>제9조(이용료 등의 징수)</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센터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u>(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액 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p>
<p><u><부 칙></u></p>	<p>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5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p>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p> <p>① ~ ③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u></p> <p><u>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u></p>
<p><u><부 칙></u></p>	<p>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4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p>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의3(할인) ① 구청장은 제1 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에 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할인율은 규 칙으로 정한다.</p> <p>1. ~ 11. (생 략)</p> <p><u><신 설></u></p>	<p>제13조의3(할인) ① ----- ----- ----- -----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u>1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u> <u>(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u> <u>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u> <u>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u> <u>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u> <u>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u> <u>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u> <u>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u> <u>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u> <u>결제하는 자. 다만, 소상공인</u> <u>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u> <u>능한 경우에 한한다.</u></p>
<p><u><부 칙></u></p>	<p>제2조(유효기간) 제13조의3제1항 제12호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p>

9.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① ~ ④ (생 약) <u><신 설></u>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u> <u>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u> <u>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u> <u>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u> <u>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u> <u>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u> <u>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u> <u>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u> <u>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u> <u>자에게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u> <u>및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면</u> <u>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u> <u>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u> <u>경우에 한한다.</u> ⑥ 제1항 및 제2항, 제5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 용한다.
<u><신 설></u>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제5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u><부 칙></u>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에 한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이용료 등을 경감하는 조문을 일괄개정의 방식으로 신설함에 따라 시설별 할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시설별 할인에 따른 손실액을 추계(서울특별시 추계기준 반영)한 결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또는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함. (※시설별 할인 손실액 추계현황 참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김유아
연락처	02-3153-8573

□ 시설별 할인 손실액 추계현황

【'18년도 전체수입 중 제로페이 사용금액(30% 가정)에 대한 10%할인 금액】

(단위: 천 원)

시설 명 (담당부서)	이용요금 내용	현재 요금	2018년 세입징수액	할인 내용		2019년 세입감소 예상액	입장료(이용료) 부과 징수 근거
				할인율 [%]	할인 시 손실예상액		
장난감대여점 (가정복지과)	연회비	10	14,145	10	424	4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마포중앙 도서관	대관료/다목적강당	450	75,058	10	2,252	25,595	서울특별시 마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관료/세미나실	330					
	대관료/갤러리	300					
	대관료/소강의실	10					
	대관료/집필실	10					
	대관료/파아노	15					
	수강료	125	347,631	10	10,428		
영어교육센터	수강료	100	196,241	10	5,887		
마포어린이 영어도서관	수강료	60	168,363	10	5,050		
꿈나래어린이 영어도서관	수강료	60	65,902	10	1,978		
자치회관 (자치행정과)	대관료	10 (1시간)	33,000	10	990	24,99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 영 조례
	수강료	10~35	800,000	10	24,000		
마포구청 (총무과)	대관료/대강당	300(4시간)	20,000	10	600	65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관료/시청각실	100(4시간)	1,705	10	51		
청소년문화의집 (교육청소년과)	수강료	1~107	1,132,608	10	33,978	33,978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담복지센터 (교육청소년과)	수강료	6~18	19,515	10	585	585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마포구민 체육센터 (생활체육과)	대관료	130~300	863,117	10	25,893	69,4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수강료	20~120	765,957	10	22,978		
염리생활체육관 (생활체육과)	대관료	42	51,000	10	1,530		
	수강료	30~90	382,000	10	11,460		
성미산체육관 (생활체육과)	대관료	20	15,000	10	450	69,4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수강료	30~90	238,000	10	7,140		
노상·노외 주차장 (교통지도과)	주차장 이용료	(5분)150원/ 200원/250원 300원/400원	8,688,827	10	260,664	260,66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마포아트센터 (문화진흥과)	체육수강료	45	2,824,685	10	84,741	103,15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 ·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문화수강료	30	380,214	10	11,406		
	기획공연티켓	32	233,756	10	7,012		
마포구민 체육센터 (생활체육과)	대관료	130~300	863,117	10	25,893	69,4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수강료	20~120	765,957	10	22,978		
염리생활체육관 (생활체육과)	대관료	42	51,000	10	1,530		
	수강료	30~90	382,000	10	11,460		
성미산체육관 (생활체육과)	대관료	20	15,000	10	450	69,4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수강료	30~90	238,000	10	7,140		